

현안과제연구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부문

연구수행 : 김정연



CDI 충남발전연구원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부문

## 1. 현황 및 문제점

### ■ 도로, 상·하수도, 교통서비스 등 기초생활여건 취약

- '09년말 현 충청남도의 도로 포장률이 지방도는 79.4%, 시·군도는 72.0% 인데 반해, 농어촌도로는 48.4%에 불과함. 특히, 2004년 지방양여금 폐지 후 국비지원이 전무하고 지방비 재원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농어촌도로 포장률이 5년 동안('05~'09) 4.5% 증가에 그침
- 충남의 상수도 보급률('08)은 일반상수도의 경우 면이 54.9%, 읍이 86.5%, 동부가 95.9%이고, 광역상수도의 경우는 면이 36.0%, 읍이 82.8%, 동부가 95.6%로서 도농간 격차가 매우 심함
- 충청남도는 농어촌 마을하수도를 377개소 7.2천m<sup>3</sup>/일 완료하여 가동 중에 있음. 그러나 '08년 말 현재 충청남도의 평균 하수도보급률은 61.8%로서 전국(평균 88.6%)에서 가장 낮으며, 군지역은 46.8%로 농촌지역이 더 열악한 상황임
  - 이는 도시화지역, 인구밀집지역, 상수원취수장·대규모 상수원댐이 입지한 지역의 주변을 우선 지원하기 때문에 농촌지역 비중이 높은 충남은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이며, 도비 부담률 감소('09년도 도비 지원률 : 면단위 15%→7.5%, 마을 10%→5%)에 따른 시·군비 미확보로 하수도사업의 중단 및 사업 지연, 국비 반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 주거환경의 낙후, 관련 사업간 연계성 미비로 효과 저감

- 일부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제외하고 농촌주택 신축과 상하수도, 오폐수처리 시설 등 마을기반시설 정비가 연계되지 않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과가 저감되고 있음
- 개별 주택정비로 부분적인 주거환경 개선은 가능하나 마을단위의 경관·환경·어메니티 향상에는 한계가 있음
- 주택융자금 지원기준이 불량주택 소유자로서 개량을 희망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자로 제한되어 있어 영세·고령농의 주택개량에는 제약적임

- 빈집 철거는 지방비(도비 3%, 시·군비 70%)로만 시행하고 있으며,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미진하고, 철거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어 빈집을 거의 재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더구나 농촌의 고령화가 지속되어 빈집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나 빈집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 농어촌 교통서비스

- 16개 시·군 23개 업체에서 농어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인구 과소 농촌지역에서는 대중교통 운영효율이 낮아 서비스 수준이 악화되는 악순환 구조가 지속되고, 개인용 교통수단을 보유하지 못한 교통약자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 내항여객선 운임지원 보조사업은 육지에 비해 열악한 생활여건과 교통환경을 가진 도서지역 주민의 과중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여 도시와 도서간의 교류증진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09년도에는 보령, 서산, 태안, 당진지역의 총이용객수 231,366명을 대상으로 154.2백만 원을 집행하였음

### ■ 농촌중심지 개발

- 지방소도읍은 2003~2012년(10년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사업대상 22개 읍지역(2001.11.9일 지정고시)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사업을 완료한 9개 소도읍에서는 매우 창의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였으며, 이는 당해 소도읍의 지명도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있음
  - 그러나 2008년 이후 국비 지원이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축소됨에 따라 투자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고, 배후 농촌지역과의 연계성이 낮고, 행정주도로 이해관계자 참여가 저조하며, 물리적 환경개선 중심의 사업으로 사회·경제·문화적 활성화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음
- 거점면소재지는 한산면소재지와 추부면소재지에 대한 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일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비해 개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업대상지를 과감하게 확대하고 도시적인 계획요소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통해 농촌마을개발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음

### ■ 농어촌 정보화 및 정보이용

- 충청남도는 '02년부터 '09년까지 39개의 정보화마을을 선정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그 효과는 낮은 편임
- 농어업인에 대한 정보화교육은 농어업경영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커뮤니티

통한 정보 교류로 경영효율화 및 생산성 제고에 일정 기여를 하고 있음

- 농어업인의 고령화 등으로 컴퓨터에 대한 전문지식 결여로 인한 정책실효성이 미약함

## 2.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 ■ 정책목표

- 기초생활 수준이 보장되는 쾌적하고 편리한 농어촌 생활공간 창조

### ■ 추진전략

- 전략 1(3-1) : 지역주도의 개발체계 정착 촉진

- (3-1-1) 일반농산어촌개발(포괄보조)관리
- (3-1-2) 지역개발사업의 민간참여 확대

- 전략2(3-2) : 정주계층별 선도거점 개발

- (3-2-1) 신규마을 조성 및 기존마을 재개발
- (3-2-2) 소생활권 종합정비
- (3-2-3) 지역거점 기능 향상

- 전략 3(3-3) : 농어촌 기초생활여건 개선

- (3-3-1) 농어촌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용수 개발
  - 농어촌주거환경 개선
  -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 (3-3-2) 농어촌 도로정비 및 교통서비스 개선
  - 농어촌도로 정비
  - 교통서비스 강화
  -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 (3-3-3) 농어촌 정보화기반 구축 및 교육 추진
  -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 활성화
  - 농어촌정비이용 활성화

목 표

기초생활 수준이 보장되는 쾌적하고 편리한  
농어촌 생활공간 창조

주  
요  
과  
제

지역 주도의  
개발체계 정착 추진

- ▶ 일반농산어촌개발 (포괄보조) 관리
- ▶ 지역개발사업의 민간참여 확대

정주계층별 선도거점  
개발

- ▶ 신규마을 조성 및 기존마을 재개발
- ▶ 소생활권 종합정비
- ▶ 지역거점 기능 향상

농어촌 기초생활여건  
개선

- ▶ 농어촌주거환경개선 및 생활용수 개발
- ▶ 농어촌도로 정비 및 교통서비스 개선
- ▶ 농어촌 정보화기반 구축 및 교육 추진

성  
과  
지  
표

성 과 전 망	2009	2014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권역)	12	22
면소재지 활력증진(권역)	1	29
소생활권 종합정비(권역)		
농어촌도로 포장률(%)	48.4	51.0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개소)	1,117	1,291
농어촌 마을하수도(개소)	377	620

### 3. 사업계획

#### 1) 지역주도의 개발체계 정착 촉진

3-1-1-1 일반농산어촌개발(포괄보조) 관리

농촌개발과  
농지관리담당

성명 김영재  
☎ 251-2846

#####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충청남도, 16개 시·군
- 사업량 : 1석
- 사업비 : 663,738백만원(향후 총사업비 조정 내용에 따라 수정 필요)
- 사업기간 : 2010 ~ 2014(5년간)

##### ■ 필요성 및 목적

- '10년부터 군특회계가 광특회계로 개편되고 포괄보조제도가 도입되어 지자체의 사업추진 자율성이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포괄보조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지자체의 농산어촌지역개발 추진체계의 개편이 필요함
- 지자체의 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킴으로써 지역특성에 맞고 지방의 자율과 창의를 살린 지역개발정책을 추진

##### ■ 사업목표

- 충청남도, 시·군의 사업추진체계 정비 및 계획수립 비율(지자체 조사결과 활용)
- 만족도(설문조사 결과)

##### ■ 사업내용

- 충청남도와 시·군이 매년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되, 유사사업을 통폐합하거나 연계·복합하도록 유도하여 지역개발 효과를 제고토록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개선
- 일반농산어촌개발,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농어업기반정비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시·군이 포괄보조사업 계획을 수립·제출하면, 농식품부가 검토·보완하여 최종 확정하면 익년도에 사업을 추진

## Ⅰ 추진계획

- 사업대상 : 충청남도, 16개 시·군
- 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 추진절차 : 중앙부처, 계획수립 가이드라인 제시 → 지자체 계획수립·사업시행 → 모니터링 및 사업평가(지자체, 중앙부처) → 사업방식 및 추진체계 개선
- 추진사항
  - 포괄보조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포괄보조사업 총괄·조정 담당부서 지정·운영(시·도, 시·군)
  - 계획수립, 사업추진, 자체평가 과정에서 합리적 대안 도출 및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을 위해 공공·민간전문가로 등으로 구성된 지역발전협의체를 구성하거나 기초생활권 지역발전협의회 기능을 강화
  - 지역개발 전문가 포럼 구성, 담당공무원 및 지역리더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강화

## Ⅰ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연차별 재원별	합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사업량(개소)		1식	1식	1식	1식	1식
계	663,742	176,509	154,873	134,438	112,231	85,691
국비	414,543	99,476	94,323	85,398	74,681	60,665
일반회계						
광특회계	414,543	99,476	94,323	85,398	74,681	60,665
기금						
지방비	232,450	65,510	57,303	47,483	37,128	25,026
도비	10,520	14,965	13,031	9,750	7,539	55,805
시군비						
민자	16,749	11,513	3,247	1,557	422	

## Ⅰ 기대효과

-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고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세부내역 기획·시행하는 상향식 지역개발정책 추진

**Ⅰ 사업개요**

- 사업위치 : 1개 시·군
- 사업량 : 1개 지구
- 사업비 : 4,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2014(5년간)

**Ⅰ 필요성 및 목적**

- 생활환경 정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간부문의 시장참여 확대 필요
- 민간참여 확대로 파트너십에 의한 지역개발 추진으로 농촌지역 활성화

**Ⅰ 사업목표**

- 실적목표 : 1개 신규 지구 전원마을 추가 조성
- 성과목표 : 도시민 추가 유입 150명(30가구)

**Ⅰ 사업내용**

- 마을정비조합 또는 마을정비조합과 주택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등이 주체가 되어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Ⅰ 추진계획**

- 사업대상 : 신규 전원마을지구
- 시행주체 : 시장·군수
- 추진방법 : 마을정비조합, 마을정비조합과 주택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등에 의한 사업 추진
- 사업절차 : 사업제안(민간→시군) ⇒ 예비타당성조사 및 신규지구 사업성 검토 신청 ⇒ 사업대상지 선정 ⇒ 마을정비구역 지정 ⇒ 시행 계획 승인 ⇒ 기반공사 및 주택건축  
- 1개 지구 시범 적용후 확대 적용 검토

## ■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연차별 재원별	합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사업량(개소)	1			1		
계	4,500			4,500		
국비						
일반회계						
광특회계	1,050			1,050		
기    금						
지방비						
도비	135			135		
시군비	315			315		
민자	3,000			3,000		

## ■ 기대효과

- 농촌생활환경정비에 민간 참여 확대로 파트너십에 의한 지역개발 추진으로 농촌지역 활성화

## 2) 정주계층별 선도거점 개발

### (1) 신규마을 조성 및 기존마을 재개발

#### 3-2-1-1 신규마을 조성

농촌개발과  
정주지원담당

성명 가두순  
☎ 251-2854

####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16개 시·군
- 사업량 : 5개 지구
- 사업비 : 7,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2014(5년간)

#### ■ 필요성 및 목적

- 사업 필요성 : 도시민 유입으로 농촌지역 활성화 등 지속 발전
- 사업 목적 :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으로 도시민 유입 촉진 및 농촌인구·사회 유지

#### ■ 사업목표

- 실적목표 : 5개 신규 지구 추가 조성
- 성과목표 : 도시민 추가 유입 450명(150가구)

#### ■ 사업내용

- 지역특성을 살린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여유롭고 쾌적한 삶의 공간을 마련
  - 부지 조성,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원·녹지, 주차장 등 마을기반 조성
  - 은퇴자 마을, 슬로우푸드마을, 예술인마을 등 특색있는 모델을 개발하여 확대 보급
- 개발과정에서 도시민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농촌지역 활성화를 견인
- 지역주민의 공동체 형성을 강화하여 마을의 지속적인 유지·발전을 도모

## ■ 추진계획

- 사업대상 : 신규 전원마을지구
- 시행주체 : 시장·군수
- 지원대상 : 시장·군수
- 지원조건 : 기반시설비에 대해 국고 70%, 지방비 30%를 지원하고, 부족한 기반시설비등은 지방비와 입주자 부담
- 사업내용 : 시행계획 수립, 도로·상하수도·전기통신시설 등 마을기반시설
- 사업절차 : 사업제안(제안자 → 시·군) → 예비타당성조사 및 대상지 선정(시·군) → 기본계획 승인(시·군) → 마을정비구역 지정(시·도) → 시행계획 승인(시·군, 시·도) → 사업시행(시·군) → 준공(시·군, 시·도)

## ■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연차별 재원별	합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사업량(개소)	5	1	1	1	1	1
계	7,500	1,500	1,500	1,500	1,500	1,500
국비						
일반회계						
광특회계	5,250	1,050	1,050	1,050	1,050	1,050
기금						
지방비						
도비	675	135	135	135	135	135
시군비	1,575	315	315	315	315	315
민자						

## ■ 기대효과

-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 도시민 유입촉진 및 농촌인구 유지
- 주민간 공동체 형성 지역활성화 등 지속발전

## (2) 소생활권 종합정비

### 3-2-2-1 소생활권 종합정비

농촌개발과  
농촌개발담당

성명 윤병상  
☎251-2852

#### Ⅰ 사업개요

- 사업위치 : 15개 시·군
- 사업량 : 85개 권역
- 사업비 : 545,835백만원
- 사업기간 : 5년간

#### Ⅰ 필요성 및 목적

-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주민 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열악한 농촌환경 개선
-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어촌 정주공간 조성으로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도모

#### Ⅰ 사업목표

- 실적목표 : 잔여 85개 권역의 원활한 사업추진, 사업시행 권역수
- 성과목표 : 수혜가구 목표 달성률, 권역주민 만족도

#### Ⅰ 사업내용

- 생활권·영농권이 동일하고 발전 잠재력이 있는 마을들을 상호 연계하여 소권역(1개 법정리 이상) 단위로 종합개발
- 잠재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소권역의 기초생활시설, 소득기반시설, 체험관광 시설 및 프로그램,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개발
- 소권역 특성을 살린 테마의 설정과 전략적 개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 Ⅰ 추진계획

- 사업대상 : 15개 시·군

- 시행주체 : 시장, 군수
- 사업비
  - 권역당 3~5년간 40~70억원(국비 70%, 지방비 30%) 범위 내에서 권역의 규모에 따라 지원
  - 주민 공동(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 생산조직) 소득기반 시설은 보조금 80%, 자부담 20%
  - 농촌체험·관광기반시설 및 부지는 권역에서 확보(지상물, 등기료 등 부지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 제공자가 부담)
- 추진절차
  - 예비계획서 작성 및 사업신청(주민, 시·군)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권역 선정(농식품부) → 예비타당성 조사(농어촌공사 등) → 대상지 선정(심의회 심의, 농식품부) → 기본계획 수립[시·군(수립) → 시·도(보고) → 농식품부] →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시·군(승인) → 시·도(보고) → 농식품부] → 사업시행[시·군(협의회 운영) → 협의회·지역주민] → 준공검사 및 정산[시·군(신청) → 시·도(검사) → 농식품부]

## ■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연차별 재원별	합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사업량(개소)	885	16	17	17	17	18
계	545,835	18,835	129,000	129,000	129,000	140,000
국비	382,085	13,185	90,300	90,300	90,300	98,000
일반회계						
광특회계	382,085	13,185	90,300	90,300	90,300	98,000
기    금						
지방비	163,750	5,650	38,700	38,700	38,700	42,000
도비	49,125	1,695	11,610	11,610	11,610	12,600
시군비	114,625	3,955	27,090	27,090	27,090	29,400
민자						

## ■ 기대효과

- 농촌사회 삶의 질 향상과 도·농간 균형발전 도모
- 농촌정주공간조성으로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도모

### 3) 지역거점 기능 향상

#### 3-2-3-1 지방소도읍육성사업

도의새마을과  
지역개발담당

성명 주협종  
☎ 2987

##### Ⅰ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천안시(성환, 성거), 아산(염치), 서산(대산), 연기(조치원), 서천(장항), 예산(예산, 삼교), 태안(안면), 당진(합덕)
- 사업량 : 10개 소도읍
- 사업비 : 100,000백만원(국비 50,000 지방비 50,000)
- 사업기간 : 2010~2012(2년간)

##### Ⅰ 필요성 및 목적

- 소도읍의 중심기능을 강화하여 생활서비스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거점기능을 강화하여 농산어촌지역의 개발을 선도하며, 결절기능을 강화하여 도시와 농촌간 유기적 연계성을 제고
- 소도읍을 농산어촌의 경제·사회·문화적 정주거점 기능을 갖춘 중추소도시로 육성하여 인구의 우수지 역할을 수행토록 함

##### Ⅰ 사업목표

- 실적목표 : 10개 소도읍
- 성과목표 : 인구성장, 사업체수 증가, 주민 만족도 중에서 선택

##### Ⅰ 사업내용

- 도시기반시설, 생활환경정비, 경제활성화, 문화관광개발, 지역역량 강화 등을 포함하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Ⅰ 추진계획

- 사업대상 : 8개 시·군 10개 읍(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한 국비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소도읍)

- 추진주체 : 해당 시·군
- 지원조건 : 지방소도읍지원법 제4조
- 사업절차 : 제안서 작성(시·군) → 시·도(1차 심사) → 해당 중앙부처(2차 심사 및 선정) → 실시설계 및 사업추진(시·군) → 모니터링·평가(시·군, 시·도, 해당 중앙부처)

## ■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연차별 재원별	합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사업량(개소)	10	1	2	7		
계	100,000	10,000	20,000	70,000		
국비	50,000	5,000	10,000	35,000		
일반회계						
광특회계	50,000	5,000	10,000	35,000		
기금						
지방비	50,000	5,000	10,000	35,000		
도비	5,000	500	1,000	3,500		
시군비	45,000	4,500	9,000	31,500		
민자						

## ■ 기대효과

- 생활편익시설·문화기반 확충으로 소도읍의 중심성 강화, 특화산업육성 및 유통시설현대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주생활 기반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Ⅰ 사업개요**

- 사업위치 : 15개 시·군의 거점면소재지
- 사업량 : 29개 권역
- 사업비 : 217,000백만원
- 사업기간 : 5년간(2010~2014)

**Ⅰ 필요성 및 목적**

- 농어촌지역 기초생활중심지에 생활편익·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함으로써 배후 농산어촌주민의 일상생활의 편리성을 증진
- 면소재지의 중심상점가, 5일장(재래시장), 가로경관, 역사·문화·경관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면소재지 자체와 배후 농산어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복합화

**Ⅰ 사업목표**

- 실적목표 : 거점면소재지 29개 권역
- 성과목표 : 농어촌주민의 거점면소재지 이용률 향상, 만족도

**Ⅰ 사업내용**

- 면소재지의 생활편익 기능 및 문화·복지 기능 강화, 상권활성화 등을 통해 중심성과 거점성을 강화함으로써 면소재지 자체와 배후 농산어촌지역의 활성화를 촉진
- 생활편익시설, 문화·복지시설, 경관개선, 지역상권 정비, 기획·운영 S/W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되, 신규 시설의 설치보다는 기존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리모델링 등 주민편익 증진에 역점

**Ⅰ 추진계획**

- 사업대상 : 일정 수준 이상의 중심기능과 인구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면소재지

- 추진주체 : 시장, 군수
- 사업비(광특회계) : 권역당 3년간 70억원(국비 70%, 지방비 30%)
- 추진절차 : 예비계획서 작성 및 사업신청(주민, 시·군)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권역 선정(농식품부) → 예비타당성 조사(농어촌공사 등) → 대상지 선정(심의회 심의, 농식품부) → 기본계획 수립[시·군(수립) → 시·도(보고) → 농식품부] →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시·군(승인) → 시·도(보고) → 농식품부] → 사업시행[시·군(협의회 운영) → 협의회·지역주민] → 준공검사 및 정산[시·군(신청) → 시·도(검사) → 농식품부]

## ■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연차별 재원별	합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사업량(ha)	29	1		9	9	10
계	217,000	3,830	4,000	64,900	64,900	79,370
국비	151,900	2,681	2,800	45,430	45,430	55,559
일반회계						
광특회계	151,900	2,681	2,800	45,430	45,430	55,559
기금						
지방비	65,100	1,149	1,200	19,470	19,470	23,811
도비	19,530	345	360	5,841	5,841	7,143
시군비	45,570	804	840	13,629	13,629	16,668
민자						

## ■ 기대효과

- 농촌사회 삶의 질 향상과 도·농간 균형발전 도모
- 농촌정주공간조성으로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도모

#### 4) 농어촌 기초생활여건 개선

##### (1) 주택개량 및 상수도 정비

### 3-3-1-1 농어촌주거환경 개선

농촌개발과  
정주지원담당

성명 박상용  
☎ 251-2636

#### Ⅰ 사업개요

- 사업위치 : 16개 시·군
- 사업량 : 3,500동
- 사업비 : 175,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2014(5년간)

#### Ⅱ 필요성 및 목적

-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의 개량을 통해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정주의욕을 고취
- 특색있고 농어촌환경과 조화되는 주택 개량으로 농어촌경관 개선 및 지역자원화

#### Ⅲ 사업목표

- 실적목표 : 주택개량(신축 및 부분개량) 3,500동, 빈집정비 4,000동, 주택정비율
- 성과목표 : 농어촌주민의 주거만족도

#### Ⅳ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에서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주민과 농어촌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주택개량 재원을 지원
- 농어촌 빈집정비 등과 연계하고, 농어촌지역의 경관을 고려한 주택개량을 추진하되, 가급적 농어촌지역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투자효율성 증대를 도모

## ■ 추진계획

- 사업대상 : 농어촌 주민,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 지원조건
  -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전원마을 조성사업 지구내 150㎡ 이하), 신·개축 동 당 50백만원 용자, 부분개량 동당 2,500만원 이내 용자
  - 상환조건 및 대출금리 : 5년거치 15년 분할 상환, 연리 3%
- 사업내용 : 주택개량, 빈집 정비 등
- 사업절차 :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계획서 제출(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계획서 확정·시달(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확정(시장·군수 → 신청자 → 농협(통보)) → 농어촌주택개량 추진(신청자) → 준공 및 대출 신청(신청자 → 농협) → 융자금 대출(농협 → 신청자, 시·군 통보)

## ■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연차별 재원별	합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사업량(ha)	3,500	640	700	700	700	760
계	175,000	32,000	35,000	35,000	35,000	38,000
국비						
일반회계						
광특회계						
기금						
지방비						
도비	26,250	4,800	5,250	5,250	5,250	5,700
시군비	26,250	4,800	5,250	5,250	5,250	5,700
민자	122,500	22,400	24,500	24,500	24,500	26,600

## ■ 기대효과

-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어메니티 가치 향상
-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의 거주 만족감 향상

## Ⅰ 사업개요

- 사업위치 : 16개 시·군
- 사업량 : 6,000개소
- 사업비 : 12,000백만원(예상치로서 변동 가능)
- 사업기간 : 2012~2014(3년간)

## Ⅰ 필요성 및 목적

-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 보호 필요
- 농어촌의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Ⅰ 사업목표

- 실적목표 : 농어촌 주택 6,000동
- 성과목표 : 석면 위협받는 인구 12,000명 감소 ※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 Ⅰ 사업내용

- 영세 농어가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 지원을 통한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 및 국민건강 위해요인 차단
-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용 일부에 대한 국비·지방비 매칭 지원으로 농어가 슬레이트 지붕재의 조속 철거 유도

## Ⅰ 추진계획

- 사업대상 : 석면비상 가능성 및 인체 위해성 평가 여부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
- 추진주체 : 환경부
- 지원조건 : 2백만원/동
- 사업내용 : 주택개량, 빈집 정비 등 폐슬레이트 처리시 국고 지원
- 사업절차 : 수요과약 및 사업계획 제출(자치단체 → 환경부) → 사업계획

확정·시달 및 예산지원(환경부 → 자치단체) → 사업시행(자치단체) → 사업실적 보고(자치단체 → 환경부)

## ■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연차별 재원별	합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사업량(개소)	6,000			500	2,500	3,000
계	12,000			1,000	5,000	6,000
국비						
일반회계	8,400			700	3,500	4,200
광특회계						
기금						
지방비	2,400			200	1,000	1,200
도비						
시군비						
민자	1,200			100	500	600

※ 분담비율은 관계부처에 따라 변동 가능

## ■ 기대효과

- 슬레이트 지붕의 석면 비산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국민 감소

**Ⅰ 사업개요**

- 사업위치 : 16개 시·군
- 사업량 : 174개 지구
- 사업비 : 38,507 백만원(국비 26,955, 지방비 11,552)
- 사업기간 : 2010~2014(5년간)

**Ⅱ 필요성 및 목적**

- 식수 부족 및 수질오염지역에 청정용수의 안정적 공급으로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공급

**Ⅲ 사업목표**

- 실적목표 : 농촌 농업생활용수 174개 지구 개발
- 성과목표 : 지구별 평균 급수인구 160여명에게 다목적 용수 공급

**Ⅳ 사업내용**

- 면단위 이하지역 중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취수원 개발, 정수시설 설치, 배수지 설치, 관로 등 용수 공급시설 설치 지원

**Ⅴ 추진계획**

- 사업대상 : 상수도 공급이 어렵고 수질이 오염되어 식수원 확보가 지난한 지역
- 시행주체 : 시장·군수
- 지원금액 : 지구당 220백만원(보조금)
- 지원조건 : 총사업비 70% 보조(계속사업인 경우 80:20)

- 사업절차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요구(시장·군수) → 사업계획 검토 및 예산편성(시·도) → 사업계획 검토(환경부) → 국고예산 결정(기획예산처, 국회) → 국고예산 신청(지자체) → 국고예산 교부(환경부) → 기본 및 실시설계(지자체) → 시설공사(지자체) → 실적보고 및 정산처리(지자체)

##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연차별 재원별	합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사업량(개소)	174	51	50	30	30	13
계	38,507	11,447	11,000	6,600	6,600	2,860
국비	26,955	8,013	7,700	4,620	4,620	2,002
일반회계						
광특회계	26,955	8,013	7,700	4,620	4,620	2,002
기금						
지방비	11,552	3,434	3,300	1,580	1,580	858
도비	3,465	1,029	990	594	594	258
시군비	8,087	2,405	2,310	1,386	1,386	600
민자						

## ■ 기대효과

- 농어촌 주민에게 청정용수 공급으로 주민건강 향상 및 생활여건 개선

## (2) 농어촌 도로·교통망 정비 등 교통서비스 개선

### 3-3-2-1 농어촌도로 정비

도로교통과  
도로계획담당

성명 황명수  
☎ 3622

#### Ⅰ 사업개요

- 사업위치 : 16개 시·군
- 사업량 : 178.5km
- 사업비 : 147,372백만원(지방비 147,372)
- 사업기간 : 2010~2014(5년간)

#### Ⅱ 필요성 및 목적

-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 증대와 소득증대 기여하는 농어촌도로의 지속적 정비 필요
-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정비 지속 추진

#### Ⅲ 사업목표

- 실적목표 : 농어촌도로 포장률 제고(48.4% ⇒ 51.0%)
- 성과목표 :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소득 증대, 도로이용 만족도

#### Ⅳ 사업내용

-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특히 미개설 노선 정비사업 시행
- 노후 위험교량 재가설사업 추진

#### Ⅴ 추진계획

- 사업대상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 규정에 의해 고시된 도로
- 시행주체 : 시장·군수
- 재원형태 : 보통교부세 및 지방비

- 추진절차 : 도로기본계획(변경) 수립(시·군) → 도로정비계획(변경) 수립(시·군) → 연도별 도로사업계획지침시달 → 연도별 도로사업계획 수립(시·군) → 도로 노선 지정(시·군) → 검토·취합·보고(시·도) → 사업계획 확정(행안부) → 예산지원(행안부) → 시행(시·군) → 결산(시·군)

## ■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연차별 재원별	합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사업량(개소)	178.5	42.6	43.2	30.9	30.9	30.9
계	147,372	34,972	35,500	25,500	25,500	25,500
국비						
일반회계						
광특회계						
기금						
지방비	147,372	34,972	35,500	25,500	25,500	25,500
도비	2,462	462	500	500	500	500
시군비	144,510	34,510	35,000	25,000	25,000	25,000
민자						

## ■ 기대효과

- 주민의 교통편의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으로 소득 증대 기여
- 편리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의 거주 만족감 향상

###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16개 시·군 18개 시내(농어촌) 버스업체
- 사업량 : 공영버스 26대 및 벽지노선 1,611.80km 지원
- 사업비 : 8,514백만원(분권교부세 2,838, 지방비 5,676)
- 사업기간 : 2010~2014(5년간)

### ■ 필요성 및 목적

- 농어촌지역의 버스 운행으로 인한 손실비용 및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으로 지원으로 농어촌지역 주민에 대한 교통 서비스를 제고
- 특히, 상대적 교통약자(노인, 학생, 부녀자 등)에 대한 기본적인 교통 서비스 이용권 확보

### ■ 사업목표

- 실적목표 : 공영버스 26대 지원, 벽지노선 1,611.80km
- 성과목표 : 시내버스 업계 경영개선 및 주민 교통편의 제공

### ■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에 있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교통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여, 농어촌 주민의 기본적인 교통권 보장 및 일상생활 활동의 편의성 제고
- 벽지노선 운행에 따라 발생하는 시내(농어촌) 버스업체의 손실액을 보상하고, 공영버스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운행적자에 따른 운행 중단·감축을 방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 의거 벽지노선 등의 운행개선 명령으로 인한 시내(농어촌) 버스업체에 대한 손실보상 및 동법 제51조에 의거 공영버스 구입 및 대폐파비 지원

## ■ 추진계획

- 사업대상 : 16 시·군 18개 시내(농어촌) 버스업체
- 사업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에 재위임)
- 지원조건 및 내용 : 벽지노선 거리 및 공영차 대체시 지원
- 사업절차 :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 2에 의한 분권교부세 지원 확보(지원신청(업체) ⇒ 시·군 요청 ⇒ 분권 배분 지원)
- 재원형태 : 지방비 100%('05년부터 지방이양되어 분권교부세로 지원)

## ■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연차별 재원별	합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사업량(개소)	18	18	18	18	18	18
계	8,514	1,488	1,635	1,797	1,797	1,797
국비						
일반회계						
광특회계						
기금(분권)	2,838	545	545	599	599	599
지방비						
도비						
시군비	5,676	1,090	1,090	1,198	1,198	1,198
민자						

## ■ 기대효과

- 시내(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도모
- 업계 균형 배분을 통한 경영개선 및 주민 교통편의 증진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보령, 서산, 태안, 당진
- 사업량 : 4개 시·군
- 사업비 : 1,568백만원(국비 784, 지방비 784)
- 사업기간 : 2010~2014(5년간)

**■ 필요성 및 목적**

- 열악한 생활여건과 교통환경을 가진 도서지역 주민의 과중한 교통비 부담을 완화
- 도시와 도서간 교류증진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

**■ 사업목표**

- 실적목표 : 도서 주민 4,700명에 대한 여객선 운임보조
- 성과목표 : 도서 주민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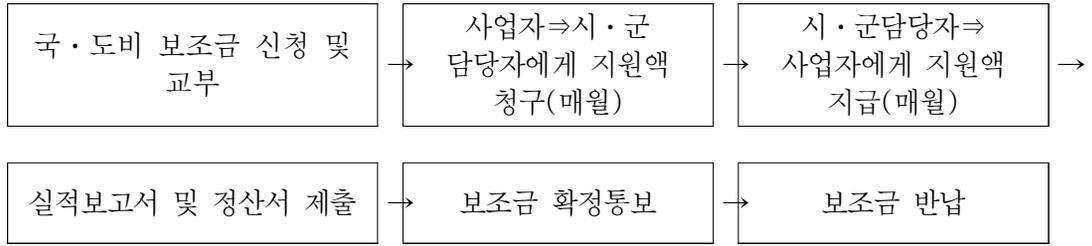
**■ 사업내용**

-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에게 여객운임의 20%를 정률 지원
- 최고 운임으로 설정된 5,000원 이상을 초과하는 운임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하고, 최고운임 미적용 항로(구간) 운임에 대해서는 20%를 정률 지원

**■ 추진계획**

- 사업대상 : 여객선이 기항하는 도서의 주민
- 사업주체 : 시·도(시·군)
- 지원조건 : 국고 50%, 도비 15%, 시군비 35%
- 사업규모 :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

- 사업절차



## ■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연차별 재원별	합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사업량(개소)	20	4	4	4	4	4
계	1,568	320	312	312	312	312
국비	784	160	156	156	156	156
일반회계	784	160	156	156	156	156
광특회계						
기금						
지방비	784	160	156	156	156	156
도비	235.2	48	46.8	46.8	46.8	46.8
시군비	548.8	112	109.2	109.2	109.2	109.2
민자						

## ■ 기대효과

- 도서지역 주민의 과중한 교통비 부담 완화 및 도시와 도서간의 교류증진

### (3) 농어촌 특성에 맞는 정보화기반 구축 및 교육 추진

#### 3-3-3-1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 활성화

정보화담당관실  
행정정보담당

성명 박옥희  
☎ 220-3139

##### Ⅰ 사업개요

- 사업위치 : 16개 시·군
- 사업량 : 39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
- 사업비 : 3,005백만원(국비 590, 도비 415, 시군비 2,000)
- 사업기간 : 2010~2014(5년간)

##### Ⅰ 필요성 및 목적

- 농산어촌 정보이용환경 조성과 주민교육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를 통한 상거래 지원으로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 마을정보센터에 상근 근로자를 배치하는 등 농산어촌지역의 IT분야 청년·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전자상거래·체험 활성화를 통한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Ⅰ 사업목표

- 실적목표 :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39명 고용
- 성과목표 : 정보화마을홈페이지 가입실적(누적), 주민 또는 이용자 만족도, 전자상거래 및 체험활동 실적 중에서 선택

##### Ⅰ 사업내용

- 정보화마을 컨설팅, 콘텐츠 유지·관리, 특산물 홍보 및 판매 콘텐츠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
- 정보화마을 지도자 육성, 운영전문가 육성 교육, 마을운영위원회 조직·운영
- 정보화마을 운영기반의 정착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등

## ■ 추진계획

- 사업대상 : 충남도내 39개 정보화마을
- 시행주체 : 행안부, 충남도, 시·군
- 지원조건 : 기 조성된 정보화마을에 대한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원
- 사업절차 : 국고보조금 교부금액 내시 및 확정 통보(행안부→지자체)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지자체 → 행안부) → 국고보조금 배정(행안부 → 지자체) →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채용(마을운영위원회) →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수행 및 인건비 지급 →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실적보고(지자체 →행안부) → (익년) 국고보조금 정산

##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연차별 재원별	합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사업량(개소)	195	39	39	39	39	39
계	3,005	601	601	601	601	601
국비	590	118	118	118	118	118
일반회계	590	118	118	118	118	118
광특회계						
기금						
지방비	2,415	483	483	483	483	483
도비	415	83	83	83	83	83
시군비	2,000	400	400	400	400	400
민자						

## ■ 기대효과

- 마을정보센터에 상근 근로자를 배치하는 등 농산어촌 지역 IT분야 일자리 창출 기여
-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마을운영자 부담경감 및 마을 자립운영 정착 유도

**Ⅰ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농림수산정보망
- 사업량 : 1식
- 사업비 : 31,230원(국비 100%)
- 사업기간 : 2010~2014

**Ⅰ 필요성 및 목적**

- 농어업인의 고품질의 정보서비스를 위한 정보이용환경 개선
- 농어업경영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커뮤니티를 통한 농어업 경영의 효율화

**Ⅰ 사업목표**

- 실적목표 : 농림수산정보망 이용자수
- 성과목표 : 이용자 만족도

**Ⅰ 사업내용**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운영, 멀티미디어 콘텐츠 확충 및 서비스
- 농어업인 정보화교육을 통한 정보화 능력 함양

**Ⅰ 추진계획**

- 사업대상 : 농어업인 및 도시소비자
- 사업주체 : 농식품부,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지자체
- 지원조건 : 국비 100%
- 사업절차 : 기본계획 수립(농식품부) ⇒ 세부사업계획 수립(보조사업자)  
→ 사업계획 조정 및 승인(농식품부) ⇒ 사업수행(보조사업자)  
→사업결과보고(보조사업자) → 사업평가 및 정산(농식품부)

## Ⅰ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연차별 재원별	합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사업량(개소)	5식	1	1	1	1	1
계	31,230	6,246	6,246	6,246	6,246	6,246
국비	31,230	6,246	6,246	6,246	6,246	6,246
일반회계	31,230	6,246	6,246	6,246	6,246	6,246
광특회계						
기    금						
지방비						
도비						
시군비						
민자						

## Ⅰ 기대효과

- 농어업경영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커뮤니티를 통한 농어업 경영의 효율화 및 생산성 제고